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도시안전과)

의안번호	제156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09. 29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 따라 성북구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2조)
- 다. 협력체계 구성 등(안 제3조)
- 라.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마.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바.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(안 제6조)
- 사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3. 7. 6. ~ 2023. 7. 26. (20일간),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¹⁾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안 제3조(협력체계 구성 등) :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안 제4조(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) :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,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,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5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: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, 정책 개발·연구, 안전보건지킴이 운영,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,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안 제6조(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) :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·

1)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1. 5. 18.]

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7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: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
-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‘2022.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’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자 수는 13만348명(재해율 0.65%),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6명(5.6%) 증가한 874명, 질병 사망자수는 1,349명에 달하고 있음.
- 2021년 기준 성북구 사업체 수는 3만4,712개소이며 종사자수는 12만 4,004명으로 최근 사망사고는 2021년 4건, 2022년 1건, 2023년 1건임.
- 2021년 1월 26일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시행2022. 1. 27.)으로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,
-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5월 18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시행 2021.11.19.)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관련 교육,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
-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²⁾ 제4조의3 개정
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2)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5. 18.]